

生活環境委員會 金鍾來議員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來議員 生活環境委員會 所屬 金鍾來議員입니다.

존경하는 文一權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 議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本議員이 우리 生活環境委員會에서 심사의결한 서울特別市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 條例中改正條例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同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우리 委員會에서는 지난 2월 20일 제3차 生活環境委員會를 개최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관련 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충분한 질의 답변을 거쳐 조례개정하는 내용을 신중히 검토 심사한 끝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同 改正條例案의 개정사유는 산업환경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용자대상업체 선정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종래의 일반제조업 위주 지원에서 패션, 디자인, 소프트웨어 등 서울형 산업의 육성·지원 및 수출 비중이 높은 외국인 투자기업에도 용자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기금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同 改正條例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자대상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용어의 정의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자가 영위하는 업종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기금운용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현행 시설자금과 같이 운전자금도 용자대상업체의 선정 및 용자금액 사정업무의 객관성 부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업무 위탁하였고,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자, 중소기업부설연구소 등 용자대상범위를 확대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同 案件에 대해서 우리 委員會에서는 종래 일반제조업 위주 지원에서 서울형 산업의 육성과 연구개발사업 등에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계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신중한 심사를 거쳐 同 改正條例案을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委員會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特別市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 條例中改正條例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와 제12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7호 내지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12. “시장재개발사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유한특별조치법·건축법·주택건설촉진법·도시재개발법 등 관계 법규 규정에 의해 기존 재래 시장을 재개발·재건축 또는 개보수하거나 임시시장을 설치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4. “상업협동조합”이라 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중 상업을 영위하는 자가 구성원인 조합 또는 사업조합(이하 “상업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
17.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함은 외자도입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의 신고 또는 인가를 받아 서울특별시 관할지역내에 공장설립 등 사업을 영위하거나 준비중인 자를 말한다.
18. “소규모점포시설”이라 함은 소규모 점포의 기존시설 및 구조를 개선하여 시설을 표준화하고 현대적 구조로 전환하는 사업을 말한다.
19. “공동창고건립”이라 함은 조직화된 중소기업업체 등이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공동창고를 건립하는 사업을 말한다.

<p>제5조 다음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5조의2(기금운용위원회) ①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위원장은 지역경제국장이 되고 위원은 경제진흥과장, 소비자보호과장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민간경제단체 임직원·금융인·중소기업인·교수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금운용계획</li> <li>2. 기금의 조성 및 결산</li> <li>3. 기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안건</li> </ol> <p>⑤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p> <p>⑥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⑦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8조(용자대상) ①운전자금의 용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관할지역내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례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울특별시 관할지역내에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li> <li>2. 제조업 지원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영위자</li> <li>3. 서울시가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자</li> <li>4. 창업투자회사</li> <li>5. 기타 시장이 서울입지특성에 적합하여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li> </ol> <p>②창업투자회사는 시장으로부터 용자받은 운전자금을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에게만 투자할 수 있다.</p> <p>제9조중 “업체소재지 관할구청장 또는 서울창업보육센터 소장을 경유하여”를 삭제한다.</p>	<p>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10조(용자대상선정 및 용자조건등) ①시장은 운전자금의 용자신청방법·용자대상 선정기준·절차 및 용자조건을 결정한다.</p> <p>②운전자금의 용자신청방법·용자대상 선정기준·용자절차·용자한도 및 용자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p> <p>③시장은 운전자금 용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의 심의를 거쳐 용자대상선정·용자금액을 결정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12조(용자대상) ①시설자금의 용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관할지역내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울특별시 관할지역내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로서 자동화사업·정보화사업·기술개발사업·사업·기술개발연구개발사업·창업지원사업·사업전환사업추진 중소기업자</li> <li>2. 외국인 투자기업 및 설비이전사업 추진 중소기업자</li> <li>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로서 민간사업자 또는 공공기관</li> <li>4. 시장재개발 사업자</li> <li>5. 상업협동조합원 등의 공동창고 건립사업 및 소규모점포 시설개선 사업자</li> <li>6. 중소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공동연구소를 설립하는 자</li> <li>7. 창업투자회사</li> <li>8.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li> <li>9. 서울창업보육센터 입주자중 시제품의 개발성공 등 입주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완성으로 독립적인 창업을 추진중인 자</li> <li>10. 기타 시장이 서울입지특성에 적합하여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li> </ol> <p>②창업투자회사는 시장으로부터 용자받은 시설자금을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에게</p>
--	--

만 투자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중 “시설자금의” 다음에 “용자신청방법”을 각각 신설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은 시설자금 용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용자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용자대상 선정·용자금액 결정 등에 관해 심의토록 하고,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다음에 “제4장 보칙”을 삭제하고, 제15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15조중 “중소기업의” 다음에 “경영안정과”를, “단체 등에” 다음에 “운전자금 및”을 각각 삽입한다.

제19조제1항중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다음에 “담당과장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하며”를 삽입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용자 및 지출된 자금과 용자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11. 서울特別市災害對策本부의構成및運營等에關한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5時 09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特別市災害對策本부의構成및運營等에關한條例案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水資源管理委員會 尹鍾一議員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鍾一議員 水資源管理委員會 所屬 尹鍾一議員입니다.

존경하는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水資源管理委員會를 대표하여 서울特別市災害對策本부의構成및運營等에關한條例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本 條例案의 제안이유는, 1995년 12월에 自然災害對策法이 제정되었고, 이어 同法施行令이 시행됨에 따라서 서울特別市災害對策本부를 구성하여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폭설, 가뭄 또는 지진 등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市長을 本部長으로 하고, 行政2副市長이 次長, 總括調整官은 企劃管理室長, 統制官 및 擔當官은 災害別 主務局長·課長으로 하는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재해응급대책의 총괄 조정 및 집행, 재해대책본부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관한 집행 및 기타 재해예방, 응급대책, 복구 등에 관한 것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해대책본부회의 운영 및 기능으로는 의장은 재해가 발생할 때에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하며, 재해예방대책,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계획에 대한 사항 및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條例案 제3조 재해대책본부의 기능에서 재해대책본부의 기능과 운영은 自然災害對策法施行令 제11조제3항에서 지방재해대책본부는 다음 사항을 관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관할구역안의 재해응급대책의 총괄 조정 및 집행.
2.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재해대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관할구역안의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民防衛基本法은 국민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 등을 포함하고 있는 법으로 同法 제6조에서는 지역민방위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條例案 제3조에서는 施行令上에 규정된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재해대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빠져 있으므로 상위법인 大統領令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해대책본부의 기능에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재해대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기로 수정하였고, 또한 條例案 제3조제2호에서 재해대책본부회의에서 의결된 재해대책의 집행에 관한 것을 명기하고 있으나 집행부에서의 의결은 잘못되었고, 협의로 하는